

대기환경보전법

2018. 10. 15.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1. 법의 전체 구조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3.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4.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1. 법의 전체구조

- 제1장 총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2013. 4. 5. 신설>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입법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대기오염물질”(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업자상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대기유해물질”(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온실가스”(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1.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농도 규제와 총량 규제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규제
 -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 라. 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조치

2. 2. 대기환경규제지역 관리대상물질인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 현재 부산광역시(기장권 제외), 김해시(진영읍 등 일부 지역 제외)(이상 부산권), 대구(달성군 제외)(대구권) 및 전라남도 광양시(봉강 등 일부 지역 제외), 순천시(송주읍 등 일부 지역 제외), 여수시(돌산읍 등 일부 지역 제외)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 부지(광양만권)

- ~~관할 시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불이익

<유사 제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아황산가스 피해를 계기로 1986년에 지정)와 여수·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악취물질 피해를 계기로 1996년에 지정)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 15개시,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은 국가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2.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규제

2. 2. 1.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설치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 5종~~ 사업장<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은 허가 대상. 그 밖의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

- 배출시설 허가의 법적 성질

관련법령: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6항)

- 시행령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생략)

(사례) 발전사업자가 사용연료를 우드칩에서 폐플라스틱등 고형연료로 변경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자 관할행정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인근 주민의 건강.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대한 위해와 주변 300m 내에 위치한 상수원(급수인구 168,355명)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다만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에 못미침)가 있다며 불허가함. 이 처분은 적법한가?

쟁점: 행정청은 법령상 제한사유에 기속되어 그 밖의 다른 사유로는 설치를 제한할 수 없다 vs 법령상 제한사유 아니더라도 그 밖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 구 대기환경보전법...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에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제1조)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2. 2.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의무

첫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 둘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 셋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기록 의무

2. 2. 3.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

-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등

3.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3.1.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3조 1항). 지자체장은 사업자가 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2항).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3항)(ex. 토사의 수송공정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장은 차량의 세륜시설과 측면살수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연도	계	시멘트, 석회 관련 제품 제조가 공업	비금속 물질 제조가 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 품 제조업	건설업	운송장 비제조 업	금속제 품제조 가공업	기타
2017	43,758	1,898	2,791	435	443	36,010	348	1,604	229

3. 2.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의 규제

- VOCs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발암물질) 대기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 주 배출원은 도장산업과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그 밖에 VOCs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VOCs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44조 1항). 시설 설치자는 VOCs 배출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계	유기용제 사용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비도로 이동오염원	...
배출량 (비중,%)	906 (100)	549 (60.6)	180 (19.9)	49 (5.4)	48 (5.3)	37 (4.1)	...

4.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결합확인검사 및 결합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합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합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합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2조(부품의 결합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합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 폭스바겐사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임의설정해 자동차 인증시험 때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조작한 것이 발각

- '14년 미국 환경단체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실도로에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이상치를 발견, 미국 EPA가 조사에 착수, 2015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LNT)의 소프트웨어가 임의설정되어 인증시험 시 실주행 시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조작 확인,리콜 명령(조작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수치는 인증 기준의 약 40배를 초과)
- 2015년 11월, 환경부는 조사대상차량 중 일부 차량(티구안 EURO-5)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하였음을 확인. 대상 차량 판매정지명령, 기 판매 차량(12만 5,522대) 리콜 명령, 과징금(141억원) 부과, 제작차 인증취소

*재순환장치: 연소된 배출가스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로 EURO-5 차량에 적용

향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높이고(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형사적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차량 교환 내지 환불을 권리로 선택,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전향적 검토